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60
----------	-------

발의연월일 : 2025. 10. 21.

발 의 자 : 안상훈 · 한지아 · 정성국
박정훈 · 고동진 · 유용원
박정하 · 배현진 · 정연욱
김성원 · 우재준 · 김형동
송석준 · 서명옥 · 백종현
박충권 · 최보운 · 김희정
유영하 · 이성권 · 김 건
최형두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는 중대 범죄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가 핵심 전제임. 그러나 최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직무 종료 후 기타 공직에 진출하거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등 특별검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법관·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제31조에 의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무직 및 고위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인사를 통한 권력 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아울러 특검 재직 중 처리한 사건 및 그 사건과 관련된 동일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임을 제한함으로써 관련자와의 부당한 관계 형성 및 전관예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역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와 동일하게 보도록 함으로써, 사건별 특검에 대해서도 동일한 공직 취임 및 수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특검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존의 공직 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율체계와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퇴직 후 공직 취임 제한)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그 직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에 임명되거나 선출될 수 없다.

1. 「대한민국헌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공직
2. 「정부조직법」 제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처·청의 장을 포함한다)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관 및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정무직 공무원 및 같은 법 제2조의2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의 장 및 상임임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공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

② 제1항에 따른 임명 또는 선출 제한 기간은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제14조에 따른 퇴직, 제15조에 따른 해임 또는 제16조에 따른 파면 등의 사유로 직무가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직에 임명되거나 선출된 경우 그 효력은 상실된다.

④ 제1항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수임 제한) ①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그 직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1. 특별검사로 재직하였던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검찰청과 그 소속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 처리하는 모든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2. 특별검사보로 재직하였던 자는 재직 당시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담당하였던 사건의 제1심 공소가 제기된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과 그 소속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 처리하는 모든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퇴직한 날부터 1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퇴직한 날부터 3년”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임제한의 범위, 대상사건의 구체적 범

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를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로 본다.

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 중인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와 시행 이후 임명되는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모두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2(퇴직 후 공직 취임 제한)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그 직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에 임명되거나 선출될 수 없다.</u> <u>1. 「대한민국헌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공직</u> <u>2. 「정부조직법」 제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처·청의 장을 포함한다)</u> <u>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관 및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u> <u>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정무직 공무원 및 같은 법 제2조의2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u> <u>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u>

<신 설>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의
장 및 상임임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
는 공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

② 제1항에 따른 임명 또는 선
출 제한 기간은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제14조에 따른
퇴직, 제15조에 따른 해임 또는
제16조에 따른 파면 등의 사유
로 직무가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직에 임명
되거나 선출된 경우 그 효력은
상실된다.

④ 제1항의 적용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수입 제한) ① 특별검
사 및 특별검사보는 그 직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수입할 수 없다.

1. 특별검사로 재직하였던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검
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대검찰청과 그 소
속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 처리하는 모든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2. 특별검사보로 재직하였던 자는 재직 당시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담당하였던 사건의 제1심 공소가 제기된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과 그 소속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 처리하는 모든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변호사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퇴직한 날부터 1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퇴직한 날부터 3년”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임제한의 범위, 대상사건의 구체적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특별검사 및 특별검사

보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를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로 본다.

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